

UCP 600의 주요개정 내용 및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관한 연구*

Critical Revision Issue and The Problems Appling in Practical Operation for UCP 600

양의동(Ui-dong Yang)

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선행연구 분석 | 참고문헌 |
| III. UCP 600의 주요개정 내용 | Abstract |
| IV. 주요쟁점 사항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 | |

Abstract

UCP 600 will now come into effect on 1 July 2007, giving practitioners more than six months to prepare for the change. The vote on the UCP was also a favourable vote on eUCP Version 1.1 which was amended to bring it into conformity with the new rules. ICC Banking commission unanimously approved the revised UCP 600 on 26 October 2006 in paris convention.

The most important revision of UCP600 have altered the technical and difficult to understand wording of UCP500 into plain simple precise and concise language, The singular achievement of UCP600 is its elimination of phrase like "reasonable care" "reasonable time" and "an it's face" from the rule. The introduction of separate articles 2 and 3 on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which contain the concept of "honour" along with the inclusion of certain ISBP wording in UCP, should bring about far greater clarity and precision than in many of the contentions articles in UCP500. The definition of negotiation should help lay to rest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terms of negotiation. The removal of reasonable time and the replacement by five banking days should speed the process and make L/Cs more attractive in the market, nevertheless UCP600 have many problems in appling it in practical field.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credit, negotiation and purchase it's accepted or undertaken payment draft by accepting bank or deferred payment bank, the second advising bark's position etc. so, I will introduce in this thesis the important revised articles of UCP600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in applying it in practicle field with reference to the specialist's opinion of the practical field and ICC opinions of drafting Group.

Key Words : UCP 600, ICC, ISBP

* 본 논문은 청운대학교 2006년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I. 서 론

ICC에서는 UCP 500의 개정을 위하여 실무그룹(Drafting Group)을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기술고문인 Gray Collyer를 임명하고 자문그룹(Consultation Group)등 3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2003년 7월부터 회의를 거쳐 회의를 한 후 “Revision of UCP 500 - Issue Identification paper, Document NO, 470/1010”을 발표하였다.

그 후 2003년 12월에 실무그룹은 자문 그룹으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받아 2004년 2월 20일에 2차 준비 초안 “Draft two of 19 articles of ucp revision Cercept current UCP 500 Articles 13 and 14)을 작성하여 각국 국내위원회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취했다.

2005년 11월 동 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제시된 의견을 심층 분석하여 UCP 600에 대한 1차 완결초안(first draft of the proposed Articles 이후 개정완결 초안)을 작성하여 각국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구하였다.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개최된 은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표하였다.

이 UCP 600은 UCP 500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난 후 그간 UCP의 500에 대한 각종 문제점은 개정보안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는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UCP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그간 UCP 500 시행중에 논쟁 되었던 ICC의 Opinions과 ICC가 발간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등과 각국의 의견과 각 분야의 실무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안을 만들었다.

이제 UCP 500의 시대는 가고 2007년 7월부터는 새로운 UCP 600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많은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UCP 600의 주요개정 사항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한 후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했다. UCP600은 UCP500의 시행중 문제가 된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리하여 애매하고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용어의 정의(definition) 조항을 신설하고 해석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둠으로서 본 규정의 적용상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UCP600은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전부 해결했다고 보는 볼 수 없고 미결상태로 둠으로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특히 실무적용상 무역실무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여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여지나 서류심사의 주체인 은행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흔적이 있는것 같다.

예를 들면 서류심사기간의 5영업일내 단축은 대금결제기간의 단축의 의미가 있으나 당해 은행의 서류심사 담당자의 업무량증가 및 수입회사의 대금결제기간의 단축을 의미한다. 그 외 신용장의 정의에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약정(honour)의 개념의 신설, 인수신용장 및 연지급 신용장의 만기전 대금할인, 제2통지은행의 신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간 또는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간의 서류송부중 분실에 대해서 서류 송부은행이 아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지급책임을 규정한 점.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테러행위(acts of terrorism)가 발생했을 때도 은행의 면책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테러

행위의 정도가 어느정도의 테러행위를 면책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타 eUCP에 관한 규정의 조항이 없고 종전의 eUCP의 규정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전자신용장 거래의 발생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UCP 600은 관련조문을 39조로 대폭 단축시킴으로서 무역거래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비서류조건의 해석,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규정, 은행이 아닌 기업체가 발행한 신용장 거래의 규제, 서류상호간의 모순이 있는 경우의 처리, 사기거래의 경우 해결책(fraud rule) ISBP의 수정보안 문제 등에 대해서 당사자 자치원칙에 일임하므로써 분명한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향후 I.C.C의 opinion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UCP600의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과 문헌연구를 통해서 심층분석하기로 하였다.

II. 선행연구 분석

그간 학계에서 UCP 600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부 개정 초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 및 개정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기술에 거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완결된 UCP 600이 2006년 10월25일 확정되었으므로 충분한 정보에 대한 한계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국내에서 발표된 UCP 600에 대한 주요 논문을 보면

“UCP 600의 개정동향과 주요내용” 김종칠 교수 신라대학교 국제상학회 - 2006

“신용장 통일규칙 개정추진현황 및 개정초안의 주요내용” 박세운교수 창원대학교, 국제상학회, 2006, “국제상업회의소 UCP 600 완성초안에 제시된 주요내용 검토” 강원진 교수 부산대학교, 국제상학회, 2006, “UCP 600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한재필 교수 동아대학교, 국제상학회, 2006 등이 있다. 우선 상기논문을 검토하는 개정된 UCP600에 대한 주요 개정 도향 또는 개정내용 그리고 논쟁점에 대해서 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재필교수의 논문에서 주요 논쟁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많은 기술이 있었으나 실무적용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ICC DC Insighton에 발표된 논문은 some criticism of current wording by professor charles Debattista.¹⁾ ICC DC Insight Vol. 12 No. 2 2006.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L/Cs” by pradeep Taneja “A Major the opportunity missed” by Jeremy smith “All products need to be reinvigorated” by David Meynell²⁾

1) ICE DC Insight vol 12 No2 April-June, 2006.

등의 발표기사 등을 참조하였음을 언급해둔다.

본 논문은 ICC DC Insight에 발표된 UCP 600에 대한 개정의견을 참조하고 실무계 및 관련 분야의 반응을 검토하여 UCP 600의 실무 적용상 문제점 및 재정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III. UCP600의 주요 개정내용

1.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credit)의 표현삭제

UCP 500 제6조³⁾ (revocable V. irrevocable credits)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UCP600 제2조 정의(definitions)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2. 통지은행의 의무명사

UCP 600⁴⁾은 통지은행과 제2통지은행의 의무(advising bank's and second advising bank's liability)를 명시하고 있다. 신용장의 통지나 조건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용장의 통지를 위해서 타은행(제2 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제2통지은행은 통지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음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3. 제2조의 “정의” 규정의 신설

UCP 600은 제2조에 정의(definitions)을 새로이 두고 있다. 여기에는 발행 의뢰인, 은행영업일(banking day), 확인(conformation), 확인은행, 신용장, 약정지급(honour), 발행은행, 매입, 지정은행, 제시, 제시자 및 지급약정(honour)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2) ICE DC Insight vol 12 No4 October-December, 2006.

3) UCP600 제2조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4) UCP600 제9조항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second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advice it has received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4. 제3조의 “해석” 규정의 신설

UCP 600은 제3조에 해석(interpretations)조항을 신설하였다. UCP 500의 잡칙규정(E. Miscellaneous Provisions)안의 46조(선적일자에 관한 일반적 표현)와 47조(선적기간에 관한 일자용어)의 내용과 “신용장”, “서류의 서명”, “은행”에 대한 해석규정을 신설하였다.

5. 조건변경(amendments)에 대한 상세규정

UCP 500의 제7조에 통지은행의 의무 제9조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관련 일부내용과 신설내용을 토대로 UCP 600에서는 9조 ‘신용장의 통지 및 조건변경’(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그리고 10조 ‘조건변경’에 대한 조항을 신설 하였다. 특히 조건변경의 제의조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건변경의 동의는 수익자의 동의의 의사표시 대신에 변경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6. 원본서류와 사본조항 신설

UCP 500 제20조 b 및 c항에서 서류의 원본(original documents)와 사본서류(copies documents)에 대해서 규척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UCP 600⁵⁾에는 원본서류의 내용을 확장 규정하였고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여 제시 서류로써 원본의 1부, 원본서류에 대한 개념, 사본서류의 제시시에 원본 또는 사본의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7. 보험서류의 발행자격 구체화

UCP 600⁶⁾에서는 보험서류의 발행자격을 구체화시켰고 그의 명칭과 서명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또는 예정보험에 의한 통지서와 같은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인수업자의 명의를 나타내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인수업자 또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proxy)의 모든 서명은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대리인 또는 대리업자(proxy)의 서명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5) UCP 600 제17조 e항

6) UCP 600 제28조 a항 a. An insurance document, such as an insurance policy, an insurance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must appear to be issue and signed by an insurance company, an underwriter or their agents or proxies.

8. 신용장과 계약 - 발행은행의 독립추상성을 해하려는 시도 억제

개정 UCP 600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⁷⁾(UCP 500, 제3조a항) 후단에서 발행은행에게 발행의뢰인이 신용장의 통합부분으로써 원인계약의 사본, 견적송장 및 기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억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발행의뢰인이 신용장상의 요구서류를 통하여 신용장의 독립성을 교묘히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억제하도록 명문화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9. 신용장의 유형 및 구체조항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중에서 어느 유형으로 사용가능한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이 사용가능한 형태를 명시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에서만 이용가능하다. 그러나 지정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도 사용가능하다고 새로이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다.

10.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약정지급의무 발생시점 및 상환의무

개정 UCP 600에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약정지급(honour)의무, 개설시점과 상환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개설되는 시점에 취소불능적인 약정지급(honour)의무를 지니며, 또한 약정지급 또는 매입을 이행한 지정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한편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시점에 약정지급 또는 매입할 취소불능적인 의무를 지니며, 또한 확인은행은 약정지급 또는 매입을 행하는 기타 지정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1.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과 거절

UCP 600⁸⁾에서는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과 거절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①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서류제시이전에 접수된 승낙 또는 거절에 대한 모든 변경의 통지를 접수하는 은행에 알려야 한다.

7) UCP 500 제4조b항 b.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8) UCP 600 제10조 d e f항

d. A bank that advises an amendment must inform the from which it received the amendment of any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e.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and will be deemed to be rejection of the amendment.

f. A provision in an amendment to the effect that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unless rejected by the beneficiary within a certain time shall be disregarded.

② 조건 변경에 대한 부분 승낙(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변경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그가 조건변경을 접수한 은행에게 알려야한다.

③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에 대한 시간제한(a time limit)이 그 조건변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간제한은 게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시된다.

12. 상환신용장의 URR 준거문언 명시조항

개정 UCP 600은 UCP 500 제19조의 은행간의 대금상환협정(bank to 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URR 준거문언이 신설되었다.

개정조항에서는 “신용장상에서 상환이 지정은행(청구은행)에 의해서 다른 당사자(상환은행) 앞으로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명시된 경우, 동 신용장은 상환이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ICC규칙에 따른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하였다.

따라서 은행간 상환대금이 존재하게 될 경우 URR 525가 적용된다는 준거문언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 규칙에 따라 상환업무가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신용장상에서 상환이 URR 525에 따른다는 준거문언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신용장을 발행할 때에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에게 신용장에서 명시된 신용장의 이용 가능한 것과 일치하는 상환수권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상환수권서는 유효기일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서류심사 기준일의 단축

UCP600은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서류심사를 위한 최대기간을 서류접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2일을 단축하였다.

UCP600⁹⁾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일치성을 결정하는데 제시 서류의 접수일 익일부터 최대 5영업 영업일의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위한 최대기간은 도래하는 유효기일 또는 서류제시를 위한 최종일과는 무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효기일이나 서류심사기간내에 서류가 제시된 경우 유효기일이나 서류심사기간이 경과하여도 최대 5영업일까지는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9)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c)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14. 일치서류에 대한 취급요령 및 지급이행의무 명시

UCP600에는 개설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에 대한 일치서류(compliant documents)에 대한 취급요령과 지급이행의무를 새로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개설은행이 서류의 일치를 결정할 경우 개설은행은 그것을 인수 또는 지급(honor)하여야 한다.

둘째 확인은행이 일치를 결정할 경우, 확인 은행은 약정지급 또는 매입하여야 하며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셋째 지정은행이 서류의 일치를 결정하고 약정지급 또는 매입을 한 경우, 지정은행은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5. 불일치서류의 통지요령 및 기간

불일치 서류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도 UCP 500 14조에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서류수령 다음날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UCP600¹⁰⁾에는 서류심사기간이 5일로 단축되면서 “서류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의 마감일 이전에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불일치 통지는 단 한번의 통지로서 모든 지급거절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서류의 보관 또는 반송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6. 선화증권의 서명

UCP500 제23조 a항 j호에 따르면 선화증권은 운송인의 명의를 있어야 하고, 운송인 또는 선장이나 이들의 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해석상의 약간의 혼란이 야기되어 왔으나 UCP600에서는 선화증권의 서명권자와 서명요건을 구체화 하였다.

선화증권은 운송인 명의로 서명을 기본으로 하고,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누구를 대리하는 서명인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인이나 선장의 대리인은 그의 대리인으로서 확인되어야 하며, 서명을 대리하게 한 사람도 운송인이나 선장으로서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UCP500 제23조 a항 ii호는 선화증권상에 본선적재의 인쇄가 있는 경우, 그 발행일자가 선적일자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본선적재의 인쇄가 있는데 별도의 본선적재의 부기를 표시한 경우

10) UCP600 제 14조 b 항

b.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this period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of any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에 대해 해석규정은 없었다. UCP600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선적제의 부가일자가 선적일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7.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양륙항 표시방법 규정

UCP500에서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수리요건 중 신용장에 규정된 적재항 및 양륙항을 실제 항구명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UCP600¹¹⁾은 수리요건으로 “선적이 신용장상에 규정된 적재항에서 양륙항까지 명시할 것“ 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에 규정된 대로 항만의 범위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양륙항의 기재범위를 융통성 있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경우에만 양륙항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선화증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8.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UCP 600에서 “철도운송서류에서 운송인의 명의를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철도운송서류상의 철도회사의 모든 서명 또는 스탬프가 운송인이 서명한 증거서류로서 수리된다.”고 철도운송서류의 수리조건에 대하여 새로 추가되었다.

UCP600은 신용장이 철도, 도로 또는 내륙수로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원본으로서의 표시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제시된 서류는 원본으로 수리될 수 있다. 이는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서명이나 원 사본의 구분없이 수리된다고 한 것은 서류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9. 운송주선인발행 운송서류 조항삭제

UCP 500 제 30조에서 “은행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가 ①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 명의를 표시하고, 서명된 별도인증된 서류와②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인 운송주선인에 의해 서명되고 별도 인증된 것으로 표시되는 운송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CP 600에서는 각 운송서류 규정 중에서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서류도 그의 서명과 대리인으로 확인되어지면 수리할 수 있다고 추가하고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에

11) UCP 600 제 16조 d 항

d.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 (c)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UCP 600 제22조 a항 iii호

III.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the port of discharge may also be shown as a range of ports or geographical area, as stated in the credit.

대한 별도규정을 모두 삭제 하였다.

결국 운송주선인도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서명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상관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FIATA B/L이나 House B/L 또는 단순한 Forwarder's B/L의 경우 대리인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인정한 것이다.

20. 무고장 운송서류

UCP 500 제32조에는 a항에 무고장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s)의 정의, b항에 운송서류상의 단서기제가 포함된 서류는 수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UCP 600에는 11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무고장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포장에 관한 하자 상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운송서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상에서 '무고장 본선적재 선화증권' 또는 '무고장 본선적재'라고 기재된 운송서류를 요구하더라도 '무고장'이라는 용어가 운송서류상에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장 부 운송서류(unclean B/L)은 하자있는 서류로서 수리거절된다는 의미이다.

21. 분할어음 발행 및 선적

UCP 500 40조 b항에는 "선적이 동일한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는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그 운송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또는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 선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분할선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UCP 600의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조항에서도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UCP 600에서는 "동일운송수단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것은 분할선적이 된다"고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운송수단이 동일운송수단인가 아니면 다른 운송수단인가에 따라 분할선적의 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ISBP177 내용을 새로이 반영한 것이다. 분할선적의 유무는 동일화물에 대하여 선박이 동일한한 2개 이상의 B/L의 경우에도 선적항 선적일 적재항이 상이하더라도 분할선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선박이 상이할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본다.

22. 서류송달중의 분실에 대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책임명시

UCP 500 제 10조에는 서류송달중의 지연 또는 분실로 인하거나 지연, 훼손 또는 기타의 오류에 대하여 은행은 면책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CP600¹²⁾은 그 이외도 "신용장에서 명시된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 경우,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가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간에, 확인은행과 개설은행간의 송달중에 분실된 경우에는 인수/지급, 매입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한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 간에 서류가 송달되는 가운데 분실된다고 하더라도 약정지급, 매입 또는 상환을 해야한다고 하여 은행의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23. 불가항력 범위에서 테러행위추가

UCP 500 17조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결과에 대해서 면책이며, 은행업무가 재개되어도 업무중단 동안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용장에 의한 인수/지급, 매입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 600¹³⁾에는 이러한 내용 중에 불가항력의 범위가운데 테러행위(acts of terrorism)에 의한 것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에 은행의 면책범위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IV. 주요쟁점사항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

1. 신용장의 정의

UCP600¹⁴⁾에서는 신용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이라함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한 개설은행의 취소불능적인 확약을 의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은 신용장은 취소불능적인 지급확약이고 지급약정(howour)은 지급, 연지급 및 인수지급을 의미하고 매입을 확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 후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 신용장에 의한 지급 방법을 일람지급, 인수지급, 연지급, 매입에 의한 지급

12) UCP 600 제35조

If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forwards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has honoured or negotiated, an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must honour or negotiate,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 even when the documents have been lost in transit between the confirming bank and issuing bank.

13) UCP 600 제36조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by Acts of God, riots,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 wars, acts of terrorism, or by any strikes or lockouts or any other causes beyond its control.

A bank will not, upon resumption of its business, honour or negotiate under a credit which expired during such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14) UCP 600 제 2조

으로 규정한 것을 매입에 의한 지급은 신용장의 정의에서는 제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종전에는 지급방법을 개설은행의 직접지급과 타은행을 이용한 간접지급 방법을 동시에 규정하였으나 타은행을 이용한 간접지급을 신용장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 개설은행에 의한 최종적인 지급이 있을 때 신용장의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설은행의 지급약약을 취소불능적인 약약으로서 취소가능신용장의 개념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 취소불능 신용장도 다른 당사자인 수익자와 확인은행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개정 UCP에서는 기업이 개설한 신용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설은행의 지급약정(honour)을 규정함으로써 보증의 개념과 구분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개설은행의 지급약정 (honour)의 불명확성

이번 6차 개정¹⁵⁾에서 개설은행의 지급약정(honour)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 새로운 지급약정은 다음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일람출급 신용장의 경우 일람으로 지급하는 것

둘째,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연지급 약약을 발행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셋째, 인수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지급약정의 개념에는 매입의 개념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의 지급약정에는 신용장에서 매입(Negotiation)이 지정은행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지정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하지 않으므로써 일람출급, 인수 및 만기에 지급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하여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매입에 의한 지급약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 일람지급, 인수지급, 연지급 외에 매입에 의한 지급도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지급약정(honour)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문언상 간략한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급방법인 일람지급, 인수지급, 및 연지급개념보다 불분명한 점이 있어 해석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질수 있다.

3. 매입의 정의 (the definition of negotiation)

제 6차 개정¹⁶⁾에서 매입의 개념은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선금 (advance fund)을 지급하거나 지급하

15) HONOUR means :

- a. to pay a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16) UCP 600 제 2조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either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기로 약정함으로써 어음(지정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 및 서류를 매입 (purchase)함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첫째, 매입은 지정은행이 제시된 어음 및 관련 서류를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 UCP500에서는 대가를 지급한다 (the giving of value)는 개념을 매입 (purchase)로 변경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매입의 개념은 단순한 선적서류를 담보로 한 대출과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종전에 선적서류를 담보로 T/R Loan을 해주는 경우에도 대가의 지급이므로 매입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었고 국내 판례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T/R Loan을 하는 것은 단순한 대출이고 매입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다.

그래서 환어음이 제시될 경우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지정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경우에는 만약에 환어음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경우에는 만약에 환어음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경우 매입을 할 수 없고 다른 지정은행이 매입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채권, 채무가 동일한 당사자에게 속하므로 민법상 혼동의 개념으로 채권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인은행의 매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환어음이 확인은행이 아니고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의 제시가 있을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확인은행의 매입권한 규정

UCP 600¹⁷⁾에서는 확인은행이 신용장 규정과 일치된 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매입할 수 있고 이 매입된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할 경우 개설은행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확인은행의 매입은 다른 지정은행의 매입과는 달리 수익자에게 상환불능조건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신용장이 매입신용장일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은행에게 매입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그리고 타 은행이 매입하였더라도 다시 확인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재매입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 5차 통일규칙 개정에는 없었던 규정으로 새로히 확인은행의 매입권한을 통일규칙에 명시한 것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때, 확인은행의 서류심사 의무와 개설은행의 심사의무의 충돌이 있을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

17) UCP 제 8조 b,c항

b. A confirm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or negotiate as of the time it adds its confirmation to the credit.
c. A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that has honou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the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whether or not another nominated bank prepai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A confirming bank's undertaking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is independent of the confirming banks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

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할 수 없고, 수익자에게 상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때 확인은행의 지급은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최종적인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확인은행의 매입에 의한 지급은 다시 개설은행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은행의 최종적인 지급확약과는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5. 인수신용장과 연지급 신용장의 할인

6차 개정 통일규칙¹⁸⁾에서는 지정은행의 경우는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 신용장에 의하여 지정은행 앞으로 제시된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연지급 약속서를 발행한 후 그 인수된 어음과 연지급 약속서에 대하여 선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6차개정 통일규칙에서 새로운 규정으로서 실무상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실무상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상 인수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타은행(매입지정은행 또는 매입은행)이 매입하여 인수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송하고 선적서류원본은 개설은행 앞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 후 인수은행으로 부터 인수통지를 받고 만기일에 인수은행에 청구하여 대금을 받으면 종료한다.

인수은행은 만기일에 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인수은행이 자신이 인수한 어음을 선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급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매입하는 경우는 채권채무의 혼동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는 연지급 약속서를 발행하도록 지정된 은행이 직접 선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역시 채권채무의 혼동으로서 채권관계가 소멸되므로 본인이 가진 채권이 없으면서 개설은행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지급이나 매입(purchase)을 신용장상 매입(Negotiation)과는 다른 개념으로 할인(discount)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은 자기가 인수 또는 지급확약한 어음을 지급하거나 매입했다면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시에는 상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6. 서류심사 기간의 단축

이번 6차 개정 통일규칙¹⁹⁾에서는 서류심사 최대 기간이 서류접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종전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종전의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이는 서류가 간단할 경우에는 무리 없이 처리될 수 있으나 서류가 복잡하거나 월말이나 년말의 경우에 서류가 많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담당자에게 사실상 많은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므로 은행의 업무량 과다와 서류심사가 소홀히 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보통 한사람의 담당자가 여러 회사를 담당하

18) UCP 600 제12조 b항

b.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19) UCP 600 제 14조항 b항

고 있으므로 심사해야할 서류가 많을 경우 은행에서는 신속하고 숙련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하자있는 서류의 경우 지급거절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 지급거절도 1회에 한하므로 서류심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개정 규정에는 개설은행뿐만 아니라 매입은행, 확인은행도 포함된 것으로서 매입은행의 경우는 선적서류 매입시간이 업무종료시간에 집중됨으로 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선적서류의 재매입 관행이 있는 국가에서는 재매입 기간까지 5일이므로 지방이나 군소도시에서 매입한 후 서울의 매입지정은행에 제시하여 매입이 완료될 때 까지가 5영업일이므로 업무상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매입제한 신용장의 매입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7. 제 2통지은행의 선정

6차 개정 통일규칙²⁰⁾은 통지은행과 제2통지은행의 의무(advising bank's and second advising bank's liability)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의 통지나 조건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용장의 통지를 위해서 타은행(제2 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제 2통지은행은 통지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2통지은행도 통지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의 통지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다 그러나 제 2통지 은행의 결정을 역시 개설은행이 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통지은행이 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설은행이 한다면 개설은행은 처음부터 제2통지 은행명을 신용장상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장이 제 2통지 은행으로 바로 통지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제 2통지 은행이 확인은행일 경우 서류는 제 1통지 은행을 반드시 경유하여 개설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8. 서류 송달 중 분실책임

UCP 500 제 16조에는 서류송달 중 지연 또는 분실로 인하여 지연, 훼손 또는 기타오류에 대하여 은행은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CP 600²¹⁾에서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설은행 또는 확인 은행은 서류가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또는 확인 은행간에 확인은행과 개설은행간에 송달 중 분실될 경우에는 인수, 지급, 매입 또는 상환해야 한다 라고 추가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신용장상 서류의 송달 중 분실될 경우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 사이에 분실될 경우 또는 확인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송달중 분실될 경우에 면책관계는 제외하고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책임

20) UCP 600 제 9조 c항

21) UCP600 제 35조

을 규정하고 있다. 서류의 분실의 경우는 매입은행(지정은행)에서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으로 우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서류가 분실된 경우에는 지정은행의 책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게 지급책임을 지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분실된 서류에 대해서는 사본서류로서 결제해야 하는지 원본서류의 재발행을 허용하는지 이러한 경우 서류의 제시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도 자동연장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므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9. 불가항력에 테러행위 추가

UCP 500 제 17조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해서 은행업무가 중단될 경우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고, 그 후 은행업무가 재개되어도 업무중단 기간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용장에 대해서는 지급인수 매입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600²²⁾에서는 이 불가항력 범위 가운데 테러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미국의 9.11 테러사건이후에 은행의 면책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테러 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된다. 시내의 테러사건이 있었으나 당해지점의 전산상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도 테러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 서류의 원본 및 사본 범위의 확대

UCP 600에서는 원본서류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였다.

원본서류에서 원본 표시가 있거나 발행회사명이 인쇄된 원본이거나 발행자 직접서명이 된 경우에는 원본서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의 복사본도 원본이 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요즘 복사기술의 발달²³⁾로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UCP600의 원본서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에서 명시된 모든 서류 중에 적어도 원본 1부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은 서류자체에서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명백하게 원본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서류발행자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

셋째. 서류상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한, 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원본으로서 서류를 수리한다.

- ① 서류발행자에 의한 수기, 타이핑, 천공 도는 스탬프로 나타나는 경우 : 또는
- ② 서류발행자의 명칭이 인쇄된 원본(original stationery)로 된것 : 또는
- ③ 제시된 서류에 적용할 수 없는 문언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것이 원본이라고 표시된 것.

그리고 신용장이 서류의 사본이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는 허용된다.

22) UCP600 제36조.

23) UCP600 제67조e항.

신용장 “in duplicate”(정부분), “in two fold”(2부)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복본의 서류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서류 그 자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적어도 원본·부 및 나머지 수는 본으로 제시되어도 충족된다.

11. 기타 UCP 600의 시행상의 문제점

UCP 600은 조문의 내용을 많이 정리하여 불명확한 문구를 없앤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개정 내용에 따른 종업원의 교육 전산 시스템의 개선 등 부수적 비용이 많이 따를 것이라 것이 실무계의 의견이다. 그리고 조문을 너무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오히려 실무계의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규정하고 그 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게 되는데 UCP는 이러한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사안을 전부 규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12. eUCP에 대한 규정의 누락

eUCP는 전자신용장을 규정하는 UCP의 보칙으로서 제정되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의 등장으로 신용장도 전자신용장(electronic L/C)이 등장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일대 혁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B/L도 불레로 B/L의 등장으로 전자 B/L이 가능하고 전자서명도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됨으로서 앞으로는 Paperless trade의 길을 열어둔 것이다. 그런데 이번 UCP600의 제정시 이러한 eUCP에 대한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실무계의 견해가 많다. 다만 eUCP를 Update시켜서 그대로 보칙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UCP상에 이러한 전자신용장에 대한 규정을 둬으로써 그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eUCP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번 초안 Group의 큰 실책으로 보여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3. 상환신용장의 상환수권서 부여

UCP600에서는 UCP500과는 달리 만약에 신용장에서 대금상환이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ICC규칙(URR525)에 의한다는 명시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첫째,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사용가능성에 일치한 상환수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 상환 수권은 유효기일과는 상관없다. 둘째, 청구은행은 상환은행에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URR525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신용장의 경우에 개설은행의 상환수권을 부여한 경우에 이러한 상환수권이 취소불능이나 의 여부도 문제가 있고 상환수권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상환은행은 3영업일내에 결제를 하여야 하는

나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상환신용장의 경우 반드시 URR525의 준용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면 URR525에 의하여 상환은행의 권리의무가 결정될 수 있으나 URR525에 의한다는 준거 문언이 없을 경우에 과연 실무상에 URR525 규정의 준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함으로서 UCP600과 URR525의 충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V. 결 론

이상 UCP 500의 개정 배경과 주요개정내용 및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새로이 탄생한 UCP600의 실무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 안에서는 UCP 500의 불명료한 문언을 삭제하고 새로운 용어의 정의(definition) 부분과 해석(interpretation)부분을 별개의 조문으로 서두에 언급한 것은 UCP 600의 적용에 새로운 시도로 보여지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용장의 정의와 매입의 정의는 너무 간략하게 정의함으로서 새로운 논쟁점으로 되어질 것 같다.

특히 기업 신용장의 도입 문제와 연지급 신용장의 매입허용 등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제 2통지은행의 법적인 문제, 확인은행의 매입, 서류심사기간의 5영업일의 해석문제 기타 전자신용장에 대한 부분의 누락 지급약정(Wonour)와 매입과의 관계등의 문제가 있고 서류 송달시 분실서류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문제등이 해결 되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사기거래(fraud)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 면제 부분은 여전히 판례의 해석에 맡긴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Canada Bank V. Credit Lyonnais Case*²⁴⁾의 경우에 캐나다은행은 연지급 인도의 알미늄 수입자 Hanco의 요청에 따라서 프랑스 수출자 Soficon을 수익자로하여 BIL 발행일로부터 180일에 지불될 수 있는 인수신용장을 발행하였고 프랑스의 Credit Lyonnais Bank가 인수은행으로 되어 있었다. 프랑스의 Credit Lyonnais Bank가 인수은행으로 되어 있었다. 프랑스의 Lyonnais은행은 수출자가 제시한 어음을 인수한 후 만기일에 개설은행에 이수된 어음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개설은행인 Canada은행은 결론적으로 본 UCP 600의 탄생은 주로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관한 애로사항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실제로 서류를 취급하고 심사하는 은행의 실무상 애로 사항은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UCP 600의 탄생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한 실무그룹 및 자문그룹의 구성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만 실무상 이러한 애로사항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장의 국제결제기능의 향상을 저해하지 않을까 두렵게 생각한다. 향후 실무계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은 더욱 많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수정 향상 되어 나가리라고 믿고 본 논문에서는 문제점제기에 그치고자 한다.

24) Dr. Georges Affak, "French Supreme Court discounting L/C acceptance", ICC DCI Insight vol. 12 No. 2, pp. 11-12, April-June 2006.

참 고 문 헌

-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 이대우·양의동 공저, 「신용장론」, 두남출판사, 2006.
- 한주섭, 「최신신용장론」, 동성사, 2004.
- 대한상공회의소·ICC한국위원회, 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행, 2004.
- 박세운,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추진현황”, 금융 3월호, 2006.
-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무역상무연구 제22권, 무역상무학회, 2004.
- 김종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사례연구, ” 국제상학 제16권 2호, 2001.
- ICC, First Complete Draft of UCP 600, ICC Banking Commission, 2005.
- Roger Kreitman, “UCP 600 : The end in sight ?”, Mantissa, 2005.
- 10.(www.mantissa.co.uk/support/nextucp2htm)
-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1995-2001) on UCP, ICC Publication No. 632., 2002. 6.
-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Doc. 470/1068, 2006.1.6.
-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Doc. 470/952, 2002.4.9.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CC Publication NO. 645, 2003.
- ICC DCINSIGHT Vol. 12 No. 1, January-March 2006.
- ICC DCINSIGHT Vol. 12 No. 2, April-June 2006.
- ICC DCINSIGHT Vol. 12 No. 3, July-September 2006.
- ICC DCINSIGHT Vol. 12 No. 4.
- ICC, Recent UCP Revision News.(www.afif.asn.au/pdf/news)
- Ole Malmqvist, ICC DCINSIGHT - UCP 600 “Key Issues” reconsidered (www.iccbooks.com/topbannersites/frane_dciart122.asp)
- Charles del Busto, UCP 500 - Correcting Some Misinterpretations, Position Paper No.2.(www.transy.ru/ags/civ/u3html)